

**환 경 부  
보도자료**

- 2005. 4. 배포
- 사진 없음
- 총 7 쪽

대 기 보 전 국 대기총량제도과	박광석 과 장 김영민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7928 cusco92@me.go.kr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

27

가 가  
가

- 환경부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1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제1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였다.
  - 동 모의거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'07. 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국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종 규모의 사업장 중 2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
  - 발전소, 지역난방공사, 소각장 및 제지공장들이 참여하여 오염물질 별(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먼지)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동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실험을 실시하였다.
- 동 모의거래 실시 결과, 82~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, 거래량은 341~6,812톤에 달하였으며,

-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은 킬로그램당 294원 ~1,104원으로 총량 초과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(단위 : 원/kg)

구 분	NOx	SOx	먼 지
평균배출권가격	1,104	294	938
총량초과부과금	2,900	4,200	6,500

- 이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,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환경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5월경에 추가 모의 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·홍보 예정이다.
-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대부분(87%) 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, 향후 모의거래시 참여의사를 밝혔다(82%).
- 환경부에서는 총량제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 및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며,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·홍보할 계획이다.
-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참고자료>

붙 임 : 배출권 모의거래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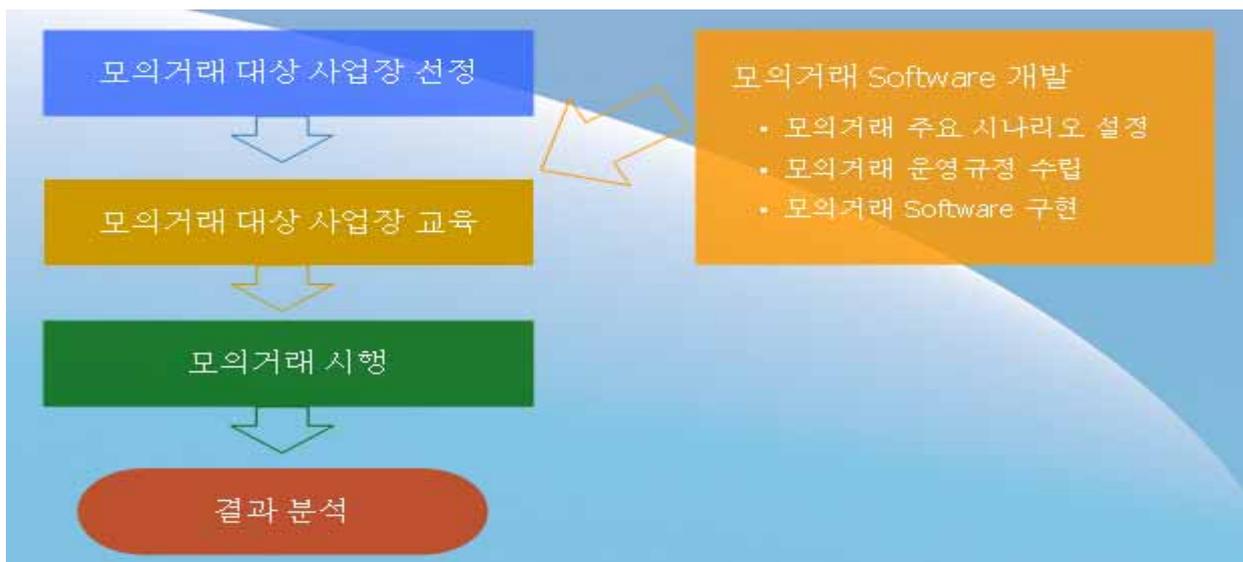
< 붙임 >

## 배출권 모의거래 주요 내용

### 1 행사개요

- 행사명 :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모의 할당 및 배출권 모의거래
- 일 시 : '05. 03. 17(목) 14:00~17:30
- 장 소 :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전산교육실
- 대 상 :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 중 27개 희망업체
- 진행 순서
  - 모의거래 사전 설명 및 시연 : 14:00~15:00
  - 모의거래 시행 : 15:00~17:30

### 2 모의거래 추진방법



### 3 참여 사업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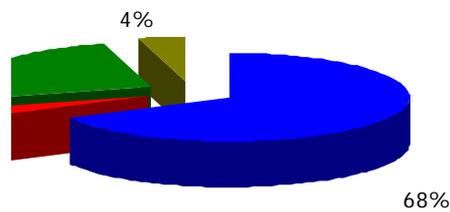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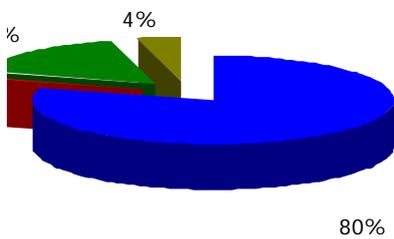
□ 개소수 : 27개소

	27	12	2	1	12
	2	1	1		
	8	3			5
	17	8	1	1	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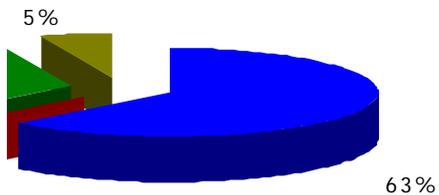
□ 오염물질 배출량

- 모의거래 참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특성은 아래와 같이 총량제 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별 배출특성과 유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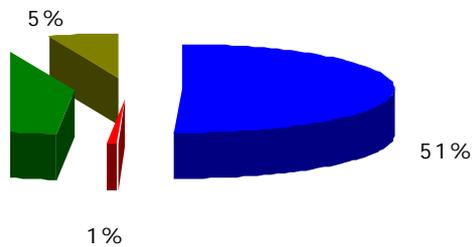
⇒ 총량제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충분



< NOx - 모의거래 참가 사업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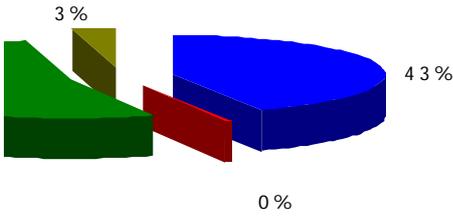


< NOx - 총량제 사업장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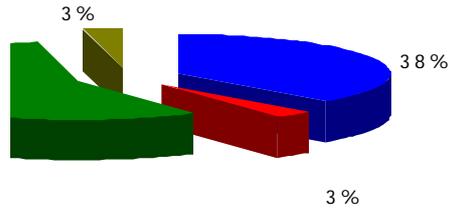


< SOx - 모의거래 참가 사업장 >

< SOx - 총량제 사업장 >



< 먼지 - 모의거래 참가 사업장 >



< 먼지 - 총량제 대상 사업장 >

## 4 모의거래 추진 내용

### < 기본 원칙 >

- 배출허용총량 할당, 이월, 거래, 보고 및 벌칙 등의 기본내용은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을 따름
- 다만, 기준연도, 시행기간,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등은 자료의 제한 등으로 인해 활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탄력적 적용

#### □ 기준 연도 : '00 ~ '04년(5년)

- 동 기간내의 대기오염물질(SOx, NOx, 먼지)배출량 기준

#### □ 시행기간 : '08 ~ '12년(5년)

- 동 기간동안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허용
- 단위 이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, 12분을 1년으로 설정

#### □ 배출허용총량 할당

##### ○ 초기연도 할당

- 할당계수 : 동일 배출시설/동일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할당계수 산정

$$\text{※ 초기연도 할당계수} = \frac{\text{기준연도기간중 그룹별 평균오염물질배출량}}{\text{기준연도기간중 그룹별 최대연료사용량}}$$

- 초기연도 할당 : 할당계수 × 기준연도 기간 중 최대 오염물질 배출량

### ○ 최종연도 할당

- 배출시설별 최적방지시설기술 수준에 대한 정의 및 범위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(향후 고시 예정),
- 참여 사업장이 제출한 저감사업 및 일반적인 저감사업(SCR, 배연탈황시설, 전기집진설비 등)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최종 연도 배출허용총량 산출

### ○ 중간연도(2~4년차) 할당

- 초기연도 할당량과 최종연도 할당량을 선형적으로 연결하여 적용

## □ 기 타

- 배출권 거래 단위 : kg
- 배출허용총량의 다음연도 이월 : 잔여 사용량의 최대 50% 이월 허용
- 배출권 거래 : 첫해는 잔여 사용량의 20%, 2~3년째는 30%, 4~5년째는 50% 거래 허용
- 배출량 보고 및 벌칙
  - 매 단위 이행기간 종료 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보고
  -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및 총량 초과 부과금 부과

## 5 모의거래 주요 결과

### □ 대기오염물질 거래내역

구 분	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총 계
질 소 산화물	거래체결량 (kg/년)	1,234,249	2,210,037	1,074,202	1,591,649	702,577	6,812,714
	거래체결수 (건)	39	27	32	32	26	156
	시장평균가 (원/kg)	3,611	382	663	382	1,278	1,104
황산화물	거래체결량 (kg/년)	105,618	327,684	385,960	487,045	523,012	1,829,319
	거래체결수 (건)	11	10	30	19	24	94
	시장평균가 (원/kg)	545	86	137	201	576	294
먼 지	거래체결량 (kg/년)	35,261	87,181	25,809	146,163	46,233	340,647
	거래체결수 (건)	18	23	15	12	14	82
	시장평균가 (원/kg)	1,158	291	389	1,222	1,397	938